

등급별(화재대응능력 1급) 평가 기준(제16조 관련)

■ 응시대상

-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
-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
■ 평가방법

구 분	평 가 방 법	합격 결정기준
필기시험	객관식 4지선다형 (40문항)	70점 이상
실기시험	7개 평가종목	평가 종목별 70점(백분율) 이상

※ 1차(필기)시험 합격 후 2차(실기) 시험 응시

■ 실기평가 종목

평가분야	평 가 종 목 (7개)
전문화재진압기술	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②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점령 ④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⑤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⑥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⑦ 위험물(유류) 화재진압